## 2020~2024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20.2.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개요	1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배경	5
	기존 계획 평가 및 여건 전망	9
IV	제4차 계획의 기본 방향 2	21
V	분야별 추진과제 3	31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3	33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46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제공	59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7	76
VI	<b>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b> 8	39
VII	실행 및 관리 계획 연	99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개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

□ (성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O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
- O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계획
  - \* 국무조정실(총괄), 농식품부(간사), 해수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21개 부처·청
- □ (주요 내용)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시책을 포함

#### - 〈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내용 〉 -

-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등
- □ (수립 절차) 관계부처 합동 '삶의 질 위원회'(총리 주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배경



## Ⅱ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배경

-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국가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제34조)하는 가치
  -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가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적 비효율 발생
  - 농어촌은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 도시는 **과밀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효율** 및 **성장 정체** 유발
    - \* 농어촌 20~39세 인구 : ('85) 395만명 → ('15) 202 (△48.9%)
    - \* 7대 대도시 교통혼잡 비용 : ('06) 15.4조원 → ('15) 21.3 (37.9%↑)
  - ⇒ 농어촌 삶의 질을 제고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을 개선 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촌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 시책\*\*을 수립·추진 중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약칭 '기본계획', '05년~)
  - 금년은 제3차 기본계획('15~'19) 종료 시점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농어촌의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새로운 5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
  - □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농정 철학**을 반영
    - 아울러, 자치분권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도 대비

# 기존 계획 평가 및 여건 전망

## 기존 계획 평가 및 여건 전망

#### 1. 기존 계획의 추진 경과

 $\Pi$ 

- ☐ '05년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O (제1차 계획) 한칠레 FTA 발효 계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 O (제2차 계획) 도시화를 지향하는 개발정책 보다는 농촌자원 발굴 및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
  - O (제3차 계획)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함께 체감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추진

#### < 1~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비교 >

구분	제 1 차	제2차	제3차
기간	'05~'09	'10~'14	'15~'19
추진 배경	한칠레 FTA 체결 농업·농촌 종합대책	포괄보조금 도입, 기초생활권 정책 재편 등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주요 내용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기초생활인프라 및 복지 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맞춤형 복지 확충,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
투융자 규모	(계획) 20.3조원	(계획) 34.5조원	(계획) 46.5조원
참여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5개 부처
특징	H/W 중심의 중앙정부, 공급자 관점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등 선진제도 신규 도입	부처들의 관심 부족으로 정책 조성 성과 미흡

## 2. 기존 계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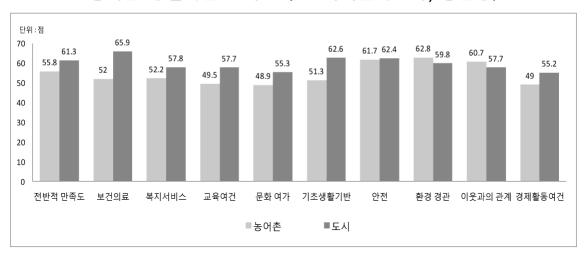
- □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주생활기반(H/W), 경제・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인프라는 전반적 개선
  -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의 항목은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원인 분석 및 정책적 대응 필요

<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KREI) >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기목표('19)
	진료서비스	76.8	73.9	71.7	71.0	80
보건	응급서비스	98.4	98.6	98.6	98.6	97
복지	노인서비스	71.8	70.1	71.1	73.3	80
	영유아	69.7	69.2	69.6	69.0	80
교육	초중학교	71.1	71.8	70.2	70.3	100
业书	평생교육	21.8	19.7	18.9	20.4	40
	상수도	67.8	69.3	71.3	72.9	82
정주생활	난방	53.1	57.0	60.0	63.1	70
기반	대중교통	90.4	90.4	88.6	88.6	100
	광대역통합망	85.8	92.8	96.4	100.0	90
경제활동·일자리	창업및 취업교육	67.3	67.4	75.4	73.2	100
문화·여가	문화프로그램	91.3	92.0	91.3	93.5	100
환경·경관	하수도	80.8	81.0	82.0	82.9	85
	방범설비	35.8	43.2	49.3	53.6	60
안전	경찰순찰	_	_	-	_	100
	소방출동	41.1	25.2	24.6	18.8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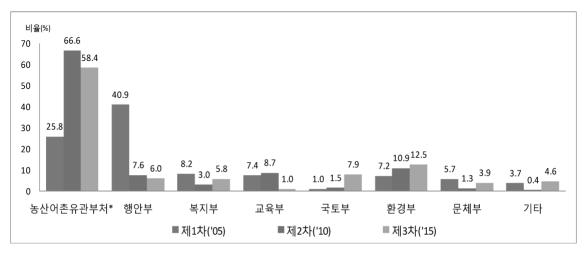
- \* 진료서비스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은 포함되지 않음
- □ (생활여건 만족도) 삶의 질 대책 추진에도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족도는 농촌(55.8점)이 도시(61.3)보다 여전히 낮은 편
  - O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 조사 결과 보건의료, 주거·생활SOC 등 기초생활기반, 교육 서비스 여건 등에서 도·농 간 특히 큰 격차
    - \* 보건의료 분야는 접근성 및 진료 과목의 제약, 기초생활기반의 경우 주거 여건 취약.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 인프라 부족 등이 지적

#### < 농어촌 생활여건 만족도 ('18 복지실태조사, 농진청) >



- 【투・융자) 삶의 질 기본계획 투・융자 규모는 1차 대비 2배 이상증가(20.3조원→46.5)하여 양적으로는 성장
  - O 삶의 질 정책에서 비중이 큰 복지·교육·안전 등을 담당하는 부처의 예산 비중이 감소하면서 **범부처 대책**으로서 의미 축소
    - \* 기본계획 기간('05~'15) 중 예산 비중 : 행정안전부(소방청, 국민안전처 포함) (40.9% → 6.0), 교육부(7.4% → 1.0), 복지부(8.2% → 5.8)

#### < 부처별 삶의 질 투입 예산 변화 (1차~3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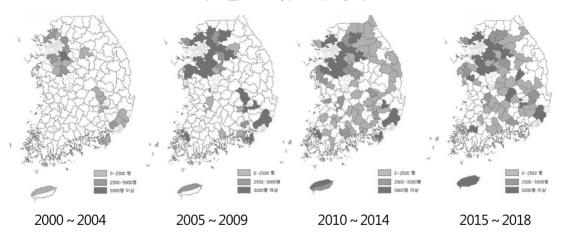
\* 농산어촌유관부처 :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 【 (정책 조정) 부처별로 소관 분야 정책을 계획・추진 중이나 중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나, 부처 간 협력・조정 시스템은 미흡
  - 기존 삶의 질 계획에서 제시된 농어촌영향평가제도(2차 기본계획)\*, 부처 간 협업 모델 시범사업(3차) 등의 과제 이행이 지연
    - \* '11년 삶의 질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문평가 형태로 운영되다 연구 중심 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17)했으나 미이행
  - O 농어촌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체계도 미비
- □ (이행 관리) 기본(5년)·시행계획(매년)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가 환류되지 못하고, 운용 가능한 정책 수단이 제한
  - 주요 이행과제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나, 부진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 예산·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지게 할 수단 부재
  - O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sup>\*</sup>, 기준 달성과 정책 간 연계 미흡
    - \* 농어촌 여건상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비현실적 목표 제시(예 : 소방출동 5분내 도책
    - 농어촌 지역만을 특화하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부족해 서비스 기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제한적
    - \* 기준 달성이 낮은 시·군들의 개선 실적이 저조('15년 달성률 하위 55개 시·군 중 46개 시·군(83.6%)이 '18년에도 하위에 포함)
- □ (지역 기반)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및 민간과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 지자체의 삶의 질 계획이 대부분 농정부서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민간의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제기

#### 3. 농어업 · 농어촌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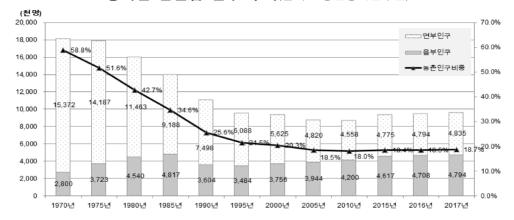
- □ (인구 구조) 귀농어・귀촌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농어촌 인구는 증가 추세이나, 원격 지역은 과소화가 심화되는 양극화 양상
  - \* 농어촌 인구 : ('00) 9,381천명 → ('10) 8,735 → ('15) 9,392 → ('18) 9,714
  - (근교지역 인구 증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대도시** 근교 시·군으로 집중되어 근교 시·군을 중심으로 농어촌 인구 증가

#### < 시군별 순전입 인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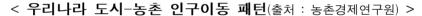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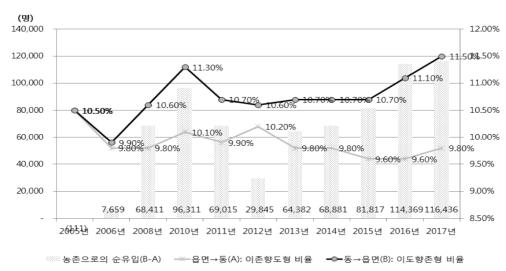
- (면 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좋은 읍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면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다 최근 완화 추세
  - \* 과소화 면(2천명 이하): ('05) 175개 → ('10) 226 → ('15) 261

< 농어촌 순전입 인구 추이(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O (사회적 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인구이동은 이혼향도 비율이 감소하고, 이도향촌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으로 순 유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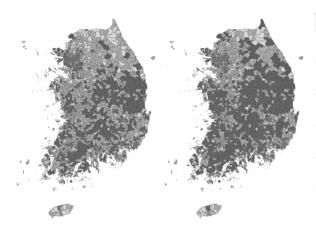




- O (소멸 위험)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의 소멸 위험지역도 확대 추세 (소멸위험 읍면동 수 : '13년 1,299곳 → '18년 1,503)
  - 농어촌의 고령화는 전국적인 추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가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어촌의 소멸위험도 가속화 우려
    - \* '18년 고령화율(전년 대비) : 동 13.1%(0.6%p↑) < 읍 15.9(0.4) < 면 29.5(0.9)
    - < 지방소멸위험 현황(2013 → 2018) >

< 농어촌 고령화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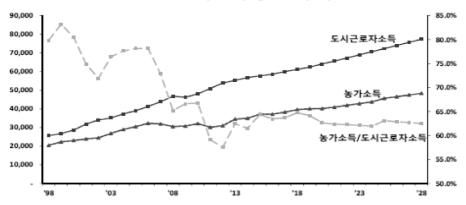
※ 출처 : 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18.7) ※ 출처 : 통계청

		\_	11 117 7
구분	2000	2010	2015
고령인구비율 (65세이상)	14.7%	20.9%	21.4%
일반	39	14	5
읍·면	(2.8)	(1.0)	(0.4)
고령(화)	591	239	217
읍·면	(42.1)	(17.0)	(15.5)
초고령	773	1,150	<u>1,182</u>
읍·면	(55.1)	(82.0)	(84.2)
총합계	1,403	1,403	1,404
	(100)	(100)	(100)

※ 일반 =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미만 고령 = 65세 이상 인구 비율 7~20% 미만 초고령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 □ (경제활력)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등 새로우 경제 모델도 농어촌 지역에서 활성화
  - (도농 소득 격차) 소득 다각화 노력에도 도·농간 소득 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40년에는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56.1% 수준** 전망
    - \*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97) 86.3% → ('17) 63.7 → ('30p) 61.4 → ('40p) 56.1

####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전망 >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 (사회적 경제) 시장 기능이 약한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 역대·협동 등 사회적 가치에 기초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 활발
  - \* 농어촌 인구 비중은 18.8%이나, 전체 협동조합의 28.9% · 사회적기업의 30.3%가 농어촌 소재
  - 농어촌에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을 창출 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 중

#### < 농촌지역의 주요 사회적경제조직('18) >

구분	특성	개소수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병행	643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을 통해 영위하고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4,207
마을기업	마을 단위로 주민 또는 단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일자리 창출	967
농촌공동체 회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에 일자리·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262

※ 각 유형에 속하는 일부 사회적경제조직 간 중복이 있을 수 있음

- □ (정주여건) 농어촌 지역 간에도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증가로 난개발 지속 심화
  - 농어촌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미달한 하위 시·군 지역이 고착화
    - \* 군 지역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 : ('15) 31.4% → ('18) 35.4
    - \* 도농복합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 : ('15) 45.5% →('18) 50.4
  - 도시 근교 농어촌은 낮은 지가 때문에 개별입지하는 공장·숙박시설 등이 늘면서 농어촌 주민 생존권 및 농어촌 경관·생태계 위협

#### < 무분별한 공장 입지로 주민생존권 위협 >

● 익산시 장점마을 : 마을 인접(500m)지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11년~'17년 동안 연초박의
 불법 건조 시 발생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99명 중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 14명 사망



- □ (정책 환경)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 역할 강화, ICT 기술 적용 확대로 농어업・농어촌의 생산・생활 환경에도 변화 예상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자체 정책 추진** 역량에 따라 지역별 정책 성과도 격차를 보일 전망
    - 또한, 농어촌 개발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향후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 이양 과제는 '19년 시행계획 중 38개(22%, 전체 169개) 수준(전체 예산의 18.7%)
    - \* 이양 과제 :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주생활기반), 농촌자원복합화 관련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 행사(문화·여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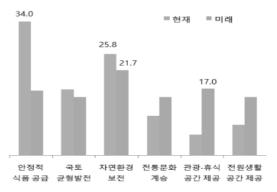
- 스마트팜 확산 등 농어가 작업환경 변화 및 소득 증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 기대
  - \* 스마트팜 : ('14) 원예 405na / 축산 23개 → ('18) 4,900 / 1,425 → ('22 목표) 7,000 / 5,750
  - \*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 : ('17) 2.5% → ('22 목표) 7.5
  - \*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생체감지 센서(건강 상태 모니터링), CCTV 연계 귀갓길 보호. 악취 감지 등 지능형 ICT 마을 구축 사업 추진('19. 행정안전부)
- □ (농어촌 인식) 농어업 생산, 농어업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인식되던 농어촌이 도시민도 함께 교류・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 확장

- < 참고 사례 : 일본 효고현 다자연 거주사업 + 시민농원 사업 >

- (**다자연 거주사업**) 일시적 체류를 희망하거나, 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거주단지와 도농 교류센터 등 지원('02~)
- o (시민 농원) 주말 체재 목적의 도시민을 위한 주거용 건물과 텃밭, 관리동, 교류 시설 등을 갖춘 농원 조성('93~)



- 자연 친화적 삶, 건강·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 \*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10) 55.8% → ('18) 72.2



< **농촌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17, 농경연) >

- 도시민들은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보전·여가공간·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장래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
- 반면, 농어촌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열악한 삶의 질 여건과 농어촌의 환경문제(악취, 해양·수질오염 등)는 한계로 작용

# 제4차 계획의 기본 방향



## 제4차 계획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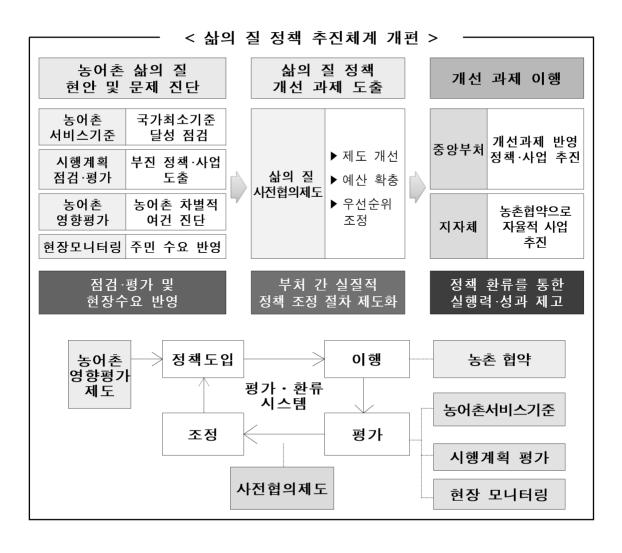
#### 가 기본 방향

W

- 【 (정책 목표) 농어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에서 지역・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 전환
  - O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 내 삶의 질 격차를 평가 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추진
  - 농어촌 인구 구조·사회적 변화로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 (정책 대상) 농어업인 중심에서 다양한 세대·계층을 포용
  -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어·귀촌자, 다문화 가정, 도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 □ (정책 범위) 농식품부·해수부 정책 수단 중심에서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수 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범위를 확대
  - O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정책의 협의·조정 및 이행 담보를 위한 추진체계의 내실화에 초점
  - O 정책적 활용도가 부족하거나, 구체적 운영 기준 미비 등으로 당초 의도한 취지 달성에 한계를 보였던 제도적 장치들의 내실화 추진
- □ (정책 거버넌스) 개별 사업,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플랫폼, 중앙과 지방, 민관의 협치 거버넌스 중심으로 고도화
  - O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워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삶의 직 정책의 패러다인 전화 >

#### 기존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생활 인프라 및 도 농 간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 목표 삶의 질 격차 완화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대응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대상 농어업인 중심 관련 全 부처 현업 범위 농식품부, 해수부 정책 중심 추진체계 내실화 단위 사업별 관리 통합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 거버 넌스 중앙정부 주도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의 현치



#### 나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뫂표

전 략

-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❷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 ❸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4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❷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❸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 ❷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❸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 ❸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추진기반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 다 주요 내용

#### [ 비전 및 목표 ]

- □ 비전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농정 철학을 반영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 보장 : 도-농간 격차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삶의 질 균형 확보
  -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
- □ 목표 :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차별 없는 대우와 취약계층·지역에 특별한 지원 정책 강조
  - 시장경제 영역 및 공공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자율적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공공서비스 취약지역임을 고려, 접근성 강화 추진
  - 농어촌 지역 어디서나 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 도시의 혼잡을 벗어나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가치를 추구하는 최근의 추세 반영
  - 농어촌의 환경 및 경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 추진전략 측면 ]

- ◇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 추진
- □ (복지서비스 향상) 고령화·과소화 심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 대응 및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책사업과 농어촌 정책사업을 연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의 개발·확산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취약지역(응급·분만·소아) 해소, 농어업인 특화·예방적 건강서비스 확충 등 추진
- □ (교육·문화 지원)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학교 간 연계 교육 강화 등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노령층의 교육 기회 확대
  - O 농어촌의 문화·여가 소외 지역 중심으로 관련 생활SOC 확충
- □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
  -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여가 등 각종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복합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후마을과 연계 강화
  -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농어촌 체류형 주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여건 조성
  - O 농어촌 공간의 질서있는 개발·보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 □ (경제활력 증진)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 활성화
  - O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로컬푸드 확산, 농어촌관광 활성화 등 지역 內 경제의 선순화 구조 마련
  - 청년, 귀농어·귀촌인 및 다문화 여성 등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의 취·창업 촉진

#### [ 추진기반 측면 ]

- □ (서비스 기준 개편) 모니터링·성과평가 등의 내실화를 위해 핵심 항목 기준 개선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항목 신설
  - O 농어촌 현실에 맞게 **일부 항목에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 제도화
- □ (이행 관리 수단 제도화)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단들을 내실화
  - O 이행이 부진하거나, 차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전협의를 제도화
  - O 주요 정책 중 농어촌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는 정책 대상으로 영향평가 도입 추진
- □ (지역의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삶의 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 도입으로 정부-지자체 간 협업 강화
  - 지역 여건에 맞는 삶의 질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지원
  - 체감도 높은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이슈의 지속적 발굴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라 투융자 규모

-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중 투융자 규모는 51.1조원 수준으로 3차 계획 규모(46조 5천억원) 대비 약 9.9%증가
  - 국비 37조원(총 투융자규모의 72.4%), 지방비 10조 3천억원(20.2%), 기타 3조 8천억원(7.4%)으로 구성
    - 국비는 농특회계 14조 6천억원(총 국비 규모의 39.4%), 균특회계 3조 8천억원(10.1%), 일반회계 12조 4천억원(33.5%) 및 기타회계 6조 3천억원(17.0%)으로 구성

#### < 재원 및 과제별 투융자 규모 >

구 분		제4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 계		100,544	104,428	105,824	101,579	98,253	510,629
재원별	국 비	73,085	75,252	76,525	73,852	71,576	370,292
	지방비	20,258	21,675	21,719	20,089	19,043	102,784
	기타	7,201	7,502	7,580	7,637	7,633	37,552
과제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19,462	19,475	20,048	20,889	21,402	101,276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5,952	5,631	5,637	5,315	5,329	27,86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65,431	68,253	69,316	65,486	62,503	330,989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9,699	11,069	10,824	9,888	9,020	50,502

- 1) 연도별 투자 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 2) 지방비는 국비 매칭 자금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만 포함

- □ 연 평균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 이양에도 불구하고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투·융자 규모 확대
  - O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식품부), 상수도 시설관리(환경부), 소하천 정비(행안부) 등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지방 이양 대상에 포함
    - \* 제1차 지방이양 대상 규모는 총 3.5조원 규모이며, 균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요 사업이 이양
  - 지방 이양 사업규모(연평균 1조 5천억원) 고려 시 총 예산 규모는 58조 6천억원 수준으로 3차 계획(46조 5천억원) 대비 약 26% 증가

#### < 제1차 지방 재정 대상 이양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사업('19 예산 기준) >

부처	사업	규모(억원)
	일 반 농 산 어 촌 개 발	4,38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268
	농업기반정비	1,788
	지역전략산업육성	221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176
환경부	상수도 시설관리	3,526
행정안전부	소하천 정비	2,585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확충	782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산업기반	95
	지역문화행사지원	168
계		14,996

# 분야별 추진과제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주 Я 과 제

####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

- · 농어촌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 ·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2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 ㆍ 농어촌 통합 돌봄 인프라 조성
- ㆍ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발 및 확산

#### 보육·육아 친화적 3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 ㆍ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

#### 4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 ·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강화
- ·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 ㆍ노령 및 여성농어업인 대한 지원 강화

# 주 Я 성 과

지 丑

성 과 목 표	2020	2024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누계)	110개소	250개소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돌봄 활동 추진 사회적 농장 운영 (누계)	30개소	100개소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신규, 누계)	30개소	150개소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농지연금 가입 건수 (누계)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누계)	16천 건 66.5%	32천 건 75%

#### 가 현황 및 문제점

- □ (의료 서비스) 농어촌은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응답률('18): 농어촌 10.7% > 도시 3.1%
  - 농어촌 지역은 응급 의료·분만·소아 등의 진료 과목과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
    - \* 의료 취약지('19) : (응급 의료) 76개 군 > 23개 시. (분만 의료) 30개 군 > 2개 시
    - \* 응급실 편도 소요시간('18) : 농어촌(26.5분) > 도시(18.3분)
    - \*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 없는 지역('17): (군) 53개 > (시) 7개
    - 특히, 농어작업 특성상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특징적 질환**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체계**도 미흡
    - \* 근골격계질환('15): (농업인) 60.8% > (일반인구) 52.2%
    - \* 순환기계질환('15): (농업인) 47.1% > (일반인구) 37.3%
- □ (돌봄 서비스)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 질병·사고·영양 등에 대한 세심한 돌봄 필요
  - \* 고령화율('18) : 전국 14.8% (면 29.5% > 읍 14.9% > 동 13.1%)
  - \* 65세 이상 단독가구 비율('17) : 읍·면 12.1%, 동 5.7%
  - 고령자들은 별도 시설보다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 혜택을 희망하나 농어촌은 **재택돌봄 서비스** 관련 **인프라 부족** 
    - \*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색을 마치고 싶다는 노인이 57.6%('17)
    - \* 방문요양기관 개소 수('17) : 15.2개/군 < 53.3개/시

- □ (보육・육아 서비스)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보육 인프라 격차가 크고, 귀농어·귀촌인 등 농어촌 정착인구의 보육 수요 대응에 한계 노출
  - 도시 대비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시간제 보육 및 야간 연장 보육 등 농어촌 특성에 맞는 육아 지원 체계가 미흡
    - \* 어린이집 미 설치 지역('18) : (읍·면) 457개 > (동) 56
  - 농어촌의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감소 추세로 청·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보육·육아 여건 개선 필요
    - \* 농촌 영유아 수(0세~5세) : ('05) 522천명 → ('15) 451 → ('17) 442 → ('18) 416
    - \* 어린이집 수(도시/농촌) : ('12) 341백개 / 85 → ('18) 314 / 78 (△7.8 / △8.4%)
- □ (사회 안전망) 농어촌 지역 주민의 노후생활 안정,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 등에 대한 관리 수단 등 부족
  -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시 가구와 농어촌 가구의 소득 격차도 커져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상태
    - \* 도시가구 중위 소득 이상 농가 비율('15): 50대 52.2% > 60대 31.3% > 70대 이상 11.1%
  - 각종 보험·연금 등의 가입률이 도시에 비해 저조해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
    - \* 국민건강보험 / 민영의료보험 가입률 : 농어가 94.6% / 52.1% < 도시 98.1 / 65.5
    - \* 공적연금 / 개인연금 가입률 : 농어가 56.5% / 25.6% < 도시 68.7 / 34.3
    - 일반 산업에 비해 농어업 분야의 재해율도 높은 수준이나, 농어가의 안전재해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
    - \* 산업재해율('17): 어업(4.06%) > 임업(1.36) > 건설업(0.84) > 농업(0.73) > 제조업(0.61)
    -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18) : 63.3%,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18) : 47.4%

#### 나 추진 과제

#### 1-1.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 ◇ 농어촌 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 여건 개선
- (1)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
-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1개소)의 시설·장비 등 보강 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수 중증의료 기능(응급, 심뇌혈관)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분야에 특화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
-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지원
  -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소, 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공공보건의료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도입('19~)
    - \* 총 20명에게 1인당 연간 2,040만원(등록금 1,200+생활비 840) 지원(최소2년~최대5년)
- ☐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거나 보건지소를 건강증진 기능 중심으로 개편
    - \* 건강생활지원센터 : ('19) 75개소 → ('20) 110 → ('21) 180 → ('22) 250
  - O 보건소가 담당하던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조정·이관

#### (2)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유지·운영을 위한 인력·재정·기술 등 지원
    - 최소한의 응급실 인력기준 충족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간호사 파견, 전문 응급처치 교육·훈련 지원
    - 응급의료 취약지(99개 지역)에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상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에 운영보조금 지원(연간 1.2~4억원)
    - 취약지 병원은 응급의학과 및 배후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거젂병원 응급실과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 O 펌뷸런스(구급차 + 소방펌프차) 적재 구급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대 하고, 구급차 미배치 농어촌 119지역대에 구급차 보강
- □ 분만 및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 취약지 해소 지원
  -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 운영을 위한 시설 · 장비비 등 지원
  -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 산부인과 폐원 시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 소아·청소년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23개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 낙도·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낙도·낙후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공
    - \*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 강원대, 경상대, 단국대, 제주대, 조선대
    - \* 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 : 경상대, 부산대, 조선대
    -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 (농/어업) : ('19) 6,300명/618명 → ('20) 6,500/640

- (3)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 여성 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 일반 여성 대비 질병 유병률 및 의료비용이 높은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유병률 및 의료비용 부담 개선
    - 농·어업안전보건센터(농업 5개소, 어업 3)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21~)
    - \* 유병률(근골격계. '15) : (여성 농업인) 70.7% > (남성 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
    - \* 의료비용(평균, '15) : (여성 농업인) 8.740천원 > (남성 농업인) 7.208 > (비농업인) 2.626

#### □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재정립

- O 농업안전보건센터와 농진청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예방적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작업 자세 및 운동방법 안내, 농약 중독 예방 및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손상 유형별 안전 교육 제공

#### □ 농어업인 정신건강 관리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제공
  - \* 정신건강복지센터 : ('19) 255개소 → ('20) 4개소 신설

#### ■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 의사협회, 관계부처 등과 함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의료 서비스 공급모델 개발 및 확산 추진

#### <사례> 홍동면 의료생협 (충남 홍성)

ㅇ홍동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의사가 홍동면에 귀촌하여 귀촌한 다른 물리치료사, 마을주민들과 공동출자한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마을 병원을 운영

#### 1-2.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 ◇ 고령화, 과소화가 심화되는 농어촌에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및 농어촌형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확산 추진
- (1) 농어촌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
-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 돌봄 인프라 조성
  - O 농어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거점조성 및 배후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활용하여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독거 고령자 가구가 분산되어 있으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하여 기존 사업 연계 확대 필요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특수 차량 도입, 통합돌봄센터 등 돌봄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등 지원
  - 농촌 폐교,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고령자 공동 생활홈 또는 주거시설로 조성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 고령자 공동 시설과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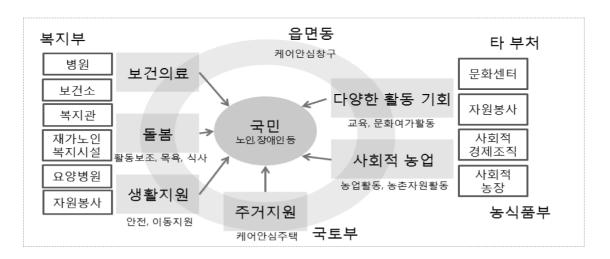
#### ☑ 지역 단위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O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자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민간 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등) 등의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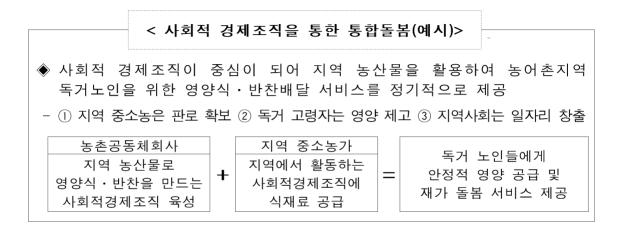
#### 

### (2)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 □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O 농어촌의 노인·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 의료,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형 통합 돌봄모델 개발



-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 \* 사회적 농장 : ('20) 30개소 → ('24) 100
-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개발 및 확산



#### 1-3. 보육 · 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육아서비스 기반 확충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확충

- 보육수요가 있으나, 보육시설이 미설치 또는 부족한 농어촌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 '19년 현재 695개소. '20년부터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
- 돌봄시설이 없는 읍·면에 3~20인 이하의 소규모 국공립 돌봄시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20년 60개소 운영 예정, 매년 10개소 이상 확충
- 주말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20년 23개소)

##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

- O 기존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장난감 도서관 사업과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보육서비스 접근성 향상
-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지속 유입 및 근속 유도를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
  - 연장반(오후4사7시반) 운영 시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월 111만원)
- 장거리 통학 차량 운영이 불가피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원격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 제고
  - \* 매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8,000대 규모의 차량 운영비 지원

### 1-4.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 ◇ 노령·취약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및 농어작업 관련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
- (1)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강화
- □ 농어업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현행 97만원 수준)을 농어업인 평균소득월액<sup>\*</sup>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 \* 국민연금가입 농어업인 평균소득월액 : ('15) 104만원 → ('17) 109 → ('18) 111
    -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외 기준을 소득만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

#### <참고> 농어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개정 방향

- o 현재기준 (지원기준): ①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더 많고, ② 연간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미만인 농어업인
  - \* ('19년 기준) '18년 평균소득월액(241만원) × 12배 = 2,895만원
- ㅇ 변경(안) (제외기준):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배당·연금소득) 또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의 과표 합계)' 기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농어업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까지 지원('24년까지 연평균 325천 세대 지원 예정)
  - \* 농업인이 아닌 농어촌 지역 주민(시업소득 500만원/연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22% 경감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한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자 지원 배제

### (2)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및 지원 방안 개선
  - O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확대하여 농어가 경영 안정
    -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18) 63.3%  $\rightarrow$  ('22) 70  $\rightarrow$  ('24) 75
    -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18) 47.4% → ('22) 52 → ('24) 55.6
    - '배우자 함께 가입하기 캠페인', '농어업에 특화된 산재형 보상서비스 도입'등 여성농어업인, 비조합원, 농어업근로자 가입 확대 추진
  - 농가 경영주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보험가입 가능하도록 90일 이상 농업 종사 근로자도 '농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대상으로 지정
    - \* (현행)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개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국내·외근로자 포함)

#### □ 어선원·어선 재해 보상 보험 개선

- 현재 3톤 어선 이상으로 되어 있는 당연가입의 추가조정 등을 통해 영세·소형 어선에 고용된 선원의 보험가입 확대
  - \* 3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률 : ('18) 8.5% → ('21) 11.0 → ('24) 12.5
- 장해어선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 목적에 **재활규정** 신설 및 의료재활지원 규정 마련
  - \* 의료재활급여 신청자 : ('18) 176명 → ('21) 200 → ('24) 226
- □ 농어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 기반조성 및 예방사업 확대
  - 농업인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통계 조사 확대 및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D/B 구축·활용을 통해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 D/B 구축 : ('20) 2종(업무상재해조사, 농업안전보건센터자료) → ('24) 5종

- 농작업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 작업환경 개선기술 및 농작업 현장 위험요인 평가・예방조치 방안 등 개발・실용화 추진
  - \* 농업작업 및 농촌생활의 편이·안전 증진기술 개발(매년 3종)
  - \* 작목별 농업노동환경 위험도 DB 구축 : ('20) 10개 작목 → ('24) 34
- O 어작업 화경·장비 개선 추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수난구호 확대
  - 응급구호장비 및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개발·보급, 어작업 환경·장비 개선 및 어선 현대화 연계 추진
  - \* (응급구호장비) 심장제세동기(AED), 응급구호 KIT 등 (개인보호장비) 어업용 헬멧, 어선어업 투망 시 추락 방지용 벨트, 어업용 장갑 및 작업화 등
  -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 통합을 통해 수난 구호 활동을 효율화하고, 구조대원의 자격을 강화
  - \* 민간해양구조대원 수색구조 교육과정(연 10시간 이수 의무) 신설 운영(해경)
- 어선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형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
  - \* '24년까지 VHF-DSC 1,235대, V-PASS 700대, 자동소화설비 227대 등 지원
-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및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확대,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등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전국 확대
  - \* 농업인 안전 재해예방 교육 목표: ('20) 10만명 *→* ('24) 50
  -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목표 : ('19) 4.6만명 → ('20~) 4.9(외국인 어선원포함)
  - \*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 ('20) 76개소 → ('24) 2.000
  - \* 안전반사판 지원대상 : ('20) 370개 마을 (15,000대) → ('24) 570 (21,000)

### (3) 노령 및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 확대
  - O 1:1 면담 및 안내문 발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지원
    - \* 농지연금 가입목표(누적) : ('19) 14천건 → ('24) 32
  - O 농지연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농지기금법 개정)
    -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근거를 신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 □ 은퇴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 고령농가(65세~74세)가 경영이양하는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 하여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 규모화 촉진
    - 보조금 지급단가 차등화를 통해 매도이양 중심으로 사업 추진
    - \* (~'17) 매도·임대 동일 300만원/ha → ('18~)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

#### □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 복지 환경 조성

- O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만큼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적극 유도
  -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여성 농어업인도 출산 급여 수급(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19.7~)되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등록 필요
- O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방안 마련
  - \* 농촌형 모성보호 제도 현황·요구 분석, 농촌형 보육서비스 모델과 복지 제도 등 개발. 여성 농어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등 맞춤형 해결방안 모색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주 요 과 제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 제공

# 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ㆍ 농어촌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 ·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용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 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ㆍ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향토 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성 과 지 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지원 (누계)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신규)	2,983대 1,200회	3,027대 1,600회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농어촌 평생학습도시 운영 (누계)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신규)	47개소 250개	49개소 300개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신규, 누계) -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지원 건수 (누계)	30개소 100개소	150개소 120개소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건수 (신규, 누계)	40개소	200개소	

#### 가 현황 및 문제점

- □ (교육 서비스) 통·폐합으로 농어촌 학교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농 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제공 노력 부족
  - 농어촌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통학 여건이 악화**되고,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실효성이 감소되는 등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저하
    - \* 학교 통학의 편리성 만족도('18) : 도시 6.8, 농촌 5.8
    - \*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 미준수 학과 현황(의학계열) : ('17) 10개 → ('18) 8 → ('19) 13
  - 지리적·문화적 여건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 충족에 한계** 노출
    - \* 방과 후 학생교육 만족도('18): 도시 6.5. 농어촌 5.7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KREI)
  - O 학생 수 감소로 복식학급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급 지속적 증가 전망
    - \* 초등학교 복식학급 현황('18) : 복식학급 788학급 중 734학급(93.1%)이 농어촌 지역
    - \* 농어촌 4,393교 중 학생 60명 이하 1,742교, 복식학급 운영 303교('18)
- □ (평생교육 인프라)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도 적절한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미흡
  - 도시 대비 높은 비문해 비율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문해 교육지원 활성화 필요
    - \*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노인 비율('15) : 도시(5.3%) < 농촌(15.9)
    - \* 비문해 비율('17) : 서울 및 광역시(4.8%), 중소도시(5.5), 농산어촌 (21.4)
  -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 미비** 
    - \* 거동 및 이동 불편으로 평생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18) : 읍 7.8% < 면 19.2

- □ (문화 서비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문화・여가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하고 도시 대비 문화서비스 품질 미흡
  - 문화·여가 기반시설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예술·체육 체험 기회 부족
    - \*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18) : 2,749개소 (도시 1,184개소, 도농복합시 743, 군 593)
    - \* 단위면적 100km²당 문화기반시설의 수('15) : 도시 17.8개 > 농어촌 1.1
    -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은 도시 주민들의 활동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 만족도도 낮은 경향
    - \*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18) : 농어촌 51.8점 < 도시 54.8
  - 지역 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 내 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확산에 하계가 있는 상황
- □ (주민 주도 문화·여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어촌 공동체 형성이 어렵고 고령화 심화로 지역 전통·향토 문화 전승 한계 노출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자발적·자생적 문화 프로그램 및 동아리 등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 농촌 주민의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14) : 혼자 33.9%, 가족 및 친지 33.4, 친구 18.6, 이웃주민 11.4,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1.6, 직장동료 0.8
  - 농어촌 지역의 전통·향토 문화 자원의 보존 및 이를 활용한 생활 문화 육성의 중요성에도 공동체 약화, 관심 저하 등으로 소멸 우려
    - \*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문항의 동의 정도('17): 도시 6.5점 > 농촌 5.1

#### 나 추진 과제

###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 통학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수준 향상 및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 O 학생별 통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통학 수단** 제공 확대
    -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선 공유형 통학버스 (에듀버스) 및 통학 택시비 지원 등 확대
    -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지원 : ('19) 2.973대  $\rightarrow$  ('20) 2.983  $\rightarrow$  ('24) 3.027
  - 시도교육청별 농어촌 학교 통학 지원 현황 조사 및 통학여건 개선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사례> 강원교육희망재단 '꽃님이 통학프로젝트'

o 통학버스(강원도 에듀버스) 이용이 어렵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원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통학택시' 혹은 '교통전용카드'를 지원

### □ 농어촌 다문화학생 지원

- O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 한국어학급 수 : ('19) 50학급 → ('20) 55 → ('21) 60 → ('22) 65 → ('23) 70
- O 대학 멘토링(대학생 멘토와 다문화학생 매칭) 사업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 \* 대학생 멘토링 중 농어촌 할당 비율 : ('19) 10%  $\rightarrow$  ('21) 14  $\rightarrow$  ('23) 18

- □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및 도시 거주 지원
  - 농어촌 학생 및 저소득층 등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 전형**' 도입 추진과 함께 사회적배려대상자 10%이상 선발 의무화 추진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 \*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비율(제주· 강원 15%, 기타지역 3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함께 '농어촌출신대학생 기숙사' 건립 추진 검토

####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및 농업인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 O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 조정을 통해 저소득 농업인 자녀에 대해 장학금 중점 지원 추진
  - $\star$  현 소득구간 기준 $(0\sim8분위)$ 을  $0\sim6분위로 조정하여 저소득 농업인 자녀 수혜 확대$
- 청년층 농어업분야 진출 효과 제고를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에 비농대생을 포함하고 **농수산후계인력 장학금** 규모 확대 추진
  - \* 농업 후계인력·청년 창업농 육성장학금 : ('19) 72억원  $\rightarrow$  ('20) 108

#### ■ 학교 시설 및 관사에 대한 주기적 안전 점검 실시

- 도서·벽지학교 등 노후된 학교 시설·관사에 대한 주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교육 여건 조성
  - \* 준공시점부터 40년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해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 \* 정밀안전점검 대상 학교(총 3,845개교) : ('20) 1,112교 → ('21~'22) 1,657 → ('23~'24) 1,076

#### (2)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 제공

- ☐ ICT 기반 학습활동 지원
  - O 농어촌 지역의 낮은 접근성을 고려한 ICT 활용 학습활동 지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프로젝트 활동 등 ICT기반 개별화 수업·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 내 무선망(AP) 구축
      -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492교(전체 672교 중 기 구축 180교 제외)에 교당 최대 6백만원 지원
  -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 교실 구축 지원
    - 도서·벽지 등 소규모학교에 온라인 화상교실을 구축하여 공동 교육과정 시범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대안적 수업 모델 개발
    - \*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인천·전남·경북교육청과 연계하여 쌍방향 회상교실 구축(17교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 O 지역 및 학교 간 연계를 통한 **농어촌학교 교육프로그램** 특색화
    - 농어촌의 강점을 반영한 교육과정 특색화 및 지역기관·농어촌 단체·마을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 ('20) 957교, 121.7억 → ('21) 988, 126.4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농어촌 학교 특성화 지원
    -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 및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 특성화 지원
      - \*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9청) : 매년 27억원 지원

####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특색화 유형

- 산업, 문화, 생태, 예술, 관광,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 아동센터, 복지·문화예술단체 및 농어촌 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등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 마을 주민이 학생과 함께 참여(수강, 재능 기부)하는 개방형 프로그램

- □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O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위한 교·강사 확보 및 시설 등 인프라 집중 지원\* 추진
    - \* (가칭)교육소외 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 ('20) 5개 내외 시·도교육청 (총 220억) → 단계적 확대
  - 학생의 진로 및 학습수준에 따른 전문·심화교과 등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추진('20~)

#### □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및 거점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유도
  - \*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액(누적) : ('20) 779억 → ('24) 3.947
- 마을과 연계한 학교 안팎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및 대학생 교육 기부 연계 프로그램(재능 심화·방학 중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 희망사다리프로젝트, 교육기부(대학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의 수학, 과학, 예체능에 재능있는 학생 대상 심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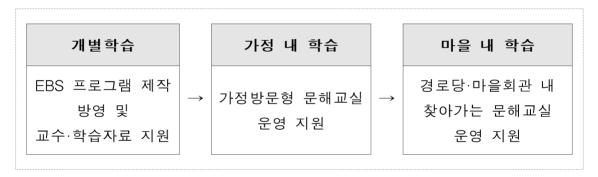
#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원어민 장학생 배치 확대

- 도서·벽지 및 농어촌 소재 학생들의 진로체험기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로 특강·상담·멘토링 제공
  -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20) 1,200회  $\rightarrow$  ('22) 1,400  $\rightarrow$  ('24) 1,600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농어촌 초등학교에 원어민 장학생 점진적 배치 확대
  - \* 원어민 장학생 배치 규모 : ('20) 252명  $\rightarrow$  ('21) 260  $\rightarrow$  ('22) 265  $\rightarrow$  ('23) 270

### 2-2.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강화

- ◇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생애 주기 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 (1) 농어촌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 □ 농산어촌 내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 경로당 및 마을회관 내 찾아가는 문해교실 및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등 지워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 문해 교육 공동체 운영 확대
  - 학교시설·경로당·마을회관 등 지역기관을 지역주민 대상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하는 주민 교육·편의공간으로 활용
    - \* 전체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 ('19) 1,600개 → ('20) 1,680
- ☐ **개별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O EBS 문해 교육 프로그램 제작·방영, EBS 프로그램 학습 보조자료 및 초·중학 단계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참고 : 농산어촌 학습자 유형별 문해교육 지원방안 >



### (2)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특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 농어촌 평생학습도시 운영 : ('20) 47개  $\rightarrow$  ('22) 48  $\rightarrow$  ('24) 49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지정 후 만 4년이 경과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22년부터 평가) 도입을 통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내실화 유도

#### <사례> 영월다운, 온마을 배움터 (강원 영월)

- (목적) 산악지역, 탄광촌 폐광, 고령화율 25%, 아동 및 청소년 비율이 낮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문학적 도시재생으로 정주의식 및 상실한 지역 가치 회생
- (프로그램) 마을 사람들의 삶, 배움, 애환, 즐거움이 있는 폐광지 탄광촌 마을 주민의 인생 이야기 제작 (영월다운, 온마을 배움터 마을 인문학 강사 양성)
- o (효과) 초고령화 사회, 폐광지역의 아픔이 있는 영월군민의 자기 극복 및 자존감 회복, 고령인 지역 주민 대다수에게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로서 자기개발 기회 활용 제공

### □ 농어촌 인구구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문화 예술 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세대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20) 250개 → ('24) 300
- 농어업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 양성 평등 전문인력 육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정책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농업인 양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추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조)

#### 2-3. 농어촌 지역 문화 : 여가 향유 여건 향상

-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및 소외 지역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1)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 O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위해 도서관 조성 비용 및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 '24년까지 총 150개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지원
- □ 농어촌 체육 공간 조성
  - O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농어촌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
    -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 조성 지원
    - \* 농어촌 지역 체육 공간 지원 : ('20) 100개소 → ('24) 120
- 농어촌 생활문화센터 조성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 자발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 (~'24 : 250개소 조성)
    - \* 예술활동,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 수요 반영한 다양한 문화공간 등 구성
- 농어촌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 지역 청년 문화 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촉진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
    - \* '24년까지 매년 220명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2) 소외 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누리카드' 발급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인당 연 9만원 사용 가능
  -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농어촌 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 가능 금액 상향(10만원) 추진

####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 운영기관 사업비 매칭(10%) 및 참여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범위 확대로 찾아가는 도서관 수혜 대상 증대
  - \* '24년까지 총 550개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운영 도서관 지원
- O 농어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 감수성 배양
  -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
  - \*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교육 : ('20) 35회 → ('24) 43

###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O 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지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관 참여 지원
  - \* 지역 참여문화시설 지원 : ('20) 300개소 → ('24) 340
  - \*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 2-4. 주민주도형 문화 : 여가 향유 지원

- ◇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및 향토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워
- (1)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 생활문화공동체 및 동호회 활성화
  - O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형성과 주민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 '24년까지 매년 40개소 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 O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 지원 및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협력체 구성 지위
    - '전국생활문화축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동호회의 문화 활동 지원



[2019년 전국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동호회, 지역주민 등 15.000여명 참여(청주)



[2019년 생활문화동호회] 우리동네 동호회 데이 발표 현장(구미)

#### □ 공동체 촉진 인력 양성

- O 지역 문화 매개 인력 발굴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추진
  - \* 지역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및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후 활동 연계 방안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 \* '24년까지 매년 130명의 지역 예비 문화 리더 양성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 (2) 향토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 □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의 인물, 설화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생활문화(지명 유래, 지역 대표음식 등, 역사유산(지역변천역사 등) 및 국난극복 등을 기획콘텐츠로 제작
    -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콘텐츠 주제 선정
  - 지방문화원 소장 향토자료 DB화,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위한 DB단위 분리, 메타데이터 보완, 이미지 문서 상 문자 키워드 검색기능 마련 추진
    - \* '24년까지 매년 1,500개의 전통문화 원천 콘텐츠 발굴
-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어촌다움 강화 및 소득화 지원
  - O 농어촌에서만 구현 가능한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모델 구축
  - 전통솜씨, 전래놀이, 세시음식 등 솜씨 상품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 \* 자료화(놀이·제조 설명서, 동영상), 소규모 공방 및 공연(마당극, 인형극 등)

#### <사례> 농경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

-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나 농경문화에서 행해지던 풍습을 재현하고 예술성있는 작품으로 극화하여 마을주민이 공연
  - \* 금산 평촌마을(농바우끄시기 마당극), 소로1리마을(소로리 볍씨이야기 마당극) 등
- □ 지역 전통문화 중심의 농어촌 문화관광축제 지원
  - O 농어촌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마을 단위 축제로 농어촌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 지원
    - 축제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농어촌축제 내실화 및 자립 유도

1단계	공동체 구성					3단계	주만+도시민 교류·화합
착수	축제 기획	4/	발전	축제 콘텐츠 강화	4/	자립	소득창출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주 요 과 제

# 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 ·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다양화
- ·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 용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 ㆍ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ㆍ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 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 ·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 ·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 상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 ㆍ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성 과 지 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 대중교통 조정을 통한 기·종점간 연계 시스템 (누계) -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교육 (누계)	217대 3,974개소	350대 4,454개소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 시군단위 하수도 보급률 (누계) - 빈집 정비 건수 (신규)	73.5% 8,000동	77% 10,000동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농어촌 복합서비스거점 구축 (누계) - 고령자 복지주택·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구축 (누계)	108개소 20개소	155개소 60개소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구축 (누계) -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육성 (누계)	800개소 140개	1,660개소 180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교통 인프라) 열악한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제약이 심화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O 농어촌 주민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은 이동권을 제약하여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 감소로 연결
    - \* 대중교통 만족도('18) : 농어촌 48.6점 < 도시 64.3
    - \*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미만 운행하는 행정리 비율('15): 50.7% (전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행정리도 9%(3.400곳)에 해당)
  - O 농어촌은 보행로 및 교통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사고 등 위해 상황에 상시 노출
    - \*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17) : 도시 413.1건 < 농촌 478.5건
    - \* 인구 100명 당 교통사고 치사율('17) : 도시 1.2명 < 농촌 6.5명
  - O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 시행 지역은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사업 모델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교통 여건 개선 필요
    - \* ('14~'17 시범사업 ) 총 30개 시·군 / 39개소 → ('18) 76개 군 / 87개소 운영
    - \*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이후, 읍·면 소재지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19.6분(도입 전 38.5분), 버스 대기시간은 평균 13.2분(도입 전 18.9분)으로 개선
- □ (기초 생활 인프라)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수준이 도시 지역에 비해 미비
  - O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도가 높고 슬레이트 지붕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도 많이 분포
    - \* 농어촌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20.7%. 전국 노후주택의 47.1%가 농어촌 소재('18)
  - 상·하수도, 난방 등 기초생활 인프라 도·농간 격차 상존
    - \* 상수도 보급률('18) : 농어촌 지역(77.0%) < 전국(96.8%)
    - \* 하수도 보급률('18) : 농어촌 지역(72.8%) < 전국(93.9%)
    - \* 도시가스 보급률('18) : 수도권·광역시 제외 지방(61.6%) < 전국(83.0%)

O 농어촌 과소화·공동화에 따른 빈집 지속 발생으로 환경, 위생, 보건, 치안 등 사회 무제 발생 우려

#### <농촌 빈집 및 빈집철거 현황>

(단위:동)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빈집현황	48,901	48,685	50,801	45,524	38,988
철거빈집	6,843	7,652	7,395	7,468	8,347

- □ (정착 기반)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제공 및 생활권 구축에 한계
  -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기능의 연계·통합 부족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우려
  - O 농어촌 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시행중이나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적정한 주택 공급 수요 증가
    - \* 전국 임대주택 공급량 중 농어촌지역 공급 비율('17) : 30.6%
  - O ICT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과소화·고령화 문제 해결 필요
- □ (환경·경관 보전) 폐기물 투기,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농어촌 환경 훼손은 심화되고 있으나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 가치는 지속 상승
  - O 농어촌 폐기물 및 축산분뇨 등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부재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 수요 대응 한계
    - \* '90년 대비 '16년 사육두수 136%, 가축분뇨 발생량 76% 증가
    - \* 농어업, 농어촌 가치 인식('18):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7.4%), '전원생활 공간 제공'(19.4), '국토의 균형 발전'(12.4),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2.2) 순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지만, 난개발 심화로 인한 농어촌 어메니티 훼손 우려

#### 나 추진 과제

### 3-1.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 (1)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다양화
- □ 농어촌 대중교통 운영체계 다변화
  - 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어촌지역)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유영·유행 주체를 고려한 **농어촌 교통서비스** 다양화
    - (버스형) 한정면허 발급을 통해 운수회사 외에 **자율방범대, 지역 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등이 운영하는 교통모델 확산
    - \*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운영 확산 : ('19) 12개 군(郡)지역 → ('24) 30
    - (택시형)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벽·오지마을 교통 취약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효도 택시 등 운행 지원(18년 이용 만족도: 만족 84.4%)
  - 수요응답형(15인승)과 노선운행(25인승)의 **혼합방식**을 도입하고, 교통 거점인 버스터미널·기차역 환승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 사례) 기존노선  $A \rightarrow B \rightarrow C(읍내)에서 A \rightarrow B \rightarrow C(읍내) \rightarrow D(터미널) 노선 개편$
    - \* 대중교통 노선 시스템을 조정하여 기·종점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19) 217대  $\rightarrow$  ('24) 350
  - O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 및 명부 관리시스템 전산화 추진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 검표 기능 및 도서민 신분 확인 기능 등 도입
  - 생활구간 운임할인 등 **해상운송비** 및 **낙도지역 교차 운항**(섬→육지)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 \* 생활구간 : 전체 1,803개 연안여객 운임 구간 중 단거리·저운임 구간(1,252개)
    - \* 백령→인천, 가거도→목포 등 장거리 항로 교차 운항 지원

- □ 첨단 교통의 농어촌 도입 및 여객선 현대화
  -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유연한 운행을 위한 서비스 모델<sup>\*</sup>을 개발· 실증<sup>\*\*</sup>하고, 향후 농어촌 지역 적용 방안 마련
    - $^*$  다수 수요자의 요청  $\rightarrow$  운행경로 최적화  $\rightarrow$  픽업시간 안내  $\rightarrow$  목적지 도착
    - \*\* 중소형버스 2대('19) → 대형버스 3대('20) → 대형 3대 중소형 5대('21)
  -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객에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
    -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 ('16~'19) 카페리, 초쾌속선 지원(1천억원 규모) → ('20~'23) 지원 선종 확대 (펀드 규모 추가 확보)
    - \* 국고여객선 대체 및 예비선 건조 : ('20) 대체건조 : 3척 / ('21~'23) 예비선 신조

#### (2)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 □ 농어촌 위험도로 구조개선
  - 급커브 선형 완화, 급경사도로 경사완화, 노폭 협소구간 노폭 확대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
    - \* 제2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 중장기계획('14~'23)에 따라 '23년까지 총 715개소 재정 지원
- □ 농어촌 지역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편의성 증진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수칙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 \*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 교육 : ('20) 3,974개소 → ('22) 4,214 → ('24) 4,454
    - \* 교통 안전용품 보급(농기계 야간반사지/안전 지팡이): ('20) 2만개/2만개 → ('24) 3만/3만
  - 노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개선

- □ 연안여객선 현대화 및 교통편의 시설 마련
  -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및 이동이 편리한 여객선 도입을 위해 선박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보조
    - \* ('20) 국고여객선 26척(국고 100%) → ('21) 일반항로 선박(국고 50%)
  -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
    - \*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기준 마련. 장애인전용 화장실 출입문 등 설치기준 재정비 등

#### □ 스마트 해상 안전 교통망 구축

- 최대 100km 해상까지 안전정보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
  - \* '20년부터 LTE-M 기지국 600개소 및 운영센터 등 망 관리체계 구축
- 전 국민 대상으로 안전항로, 위험 경보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21~)
- O VTS 미설치 연안 해역 및 신설 부두·좁은 수로에 관제구역 확대
  - 부두 신설로 인한 선박통항량 증가, 과거 사고사례를 토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순으로 레이더 설치 및 관제구역 확대
    - \* (연안해역) 군산·목포('18~'21) → 제주·서귀포('20~'23)
    - \* (신설부두) 울산신항·영흥수도('18~'20) → 포항구항('19~'21)

#### <참고> VTS(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해상교통관제시스템)

o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은 첨단과학장비 (레이다·VHF·AIS 등)를 이용하여 통항 선박의 동정관찰, 다른 선박의 항행 의도 및 식별, 위치 확인, 항로, 기상 조건 등 선박 교통 질서유지 및 해양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

#### 3-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및 난방 등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1)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O 과거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 하여 석면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매년 3만동)
  - 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창고, 축사 등)에 대한 철거 지원(총 5,200동)
- □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O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신축 및 개보수) 소요자금을 저리로 융자(농협 자금 100%, 이차보전)지원하고, 취득세 감면(연 7천동 수준)
    - \* 취득세 감면: 연면적 150 m² 이하, 280만원 한도 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위소득 45%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를 경·중· 대로 구분하여 보수 비용 지원(최대 1,241만원)
-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내실화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 \* 편의 시설 : 동작감지센서, 비디오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 O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현재:380만원) 추진
    - \*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준(457만원) 이상 인상 추진

### (2)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
  -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정비, 상·하수도 보급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 지원
    - \* 최소 30가구 이상이면서 ① 30년 이상 주택 40% 이상 또는 ② 슬레이트 주택 40% 이상인 마을(3년간 지구당 국비 15억원 내외 지원)

#### □ 농어촌 지역 하수처리 시설 설치

- O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50톤/일 미만)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08) 48.0% → ('18) 72.6 → ('24) 76.0

#### ☐ 도시가스 및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도시가스 공급: ('20) 1,288km(54만 가구) → ('23) 4,885(211만)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마을(150세대 미만)에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
  - \*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 ('20) 29개마을, 1,450세대
- 도서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해상 운송비 지원
  - 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운임\* 할인을 확대하여 도서민 운송비 절감
    - \* (화물차 운임) 기존  $20\% \to$ 확대 50 (도서민 보유 5톤 미만 화물차 약 24만대)
  - O 해상배송비 추가 소요로 육지대비 운송비가 비싼 생활필수품(유류·가스· 목재펠릿·연탄 등 생활연료)의 운송을 지원하여 도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

### (3)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 □ 중앙정부-지자체 간 추진체계 정비
  - 중앙정부는 빈집정비의 가이드라인 및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빈집 신고제 도입, 빈집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0.211 공포)
- □ 빈집 정비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신뢰도·실효성 있는 빈집정보 관리를 위해 빈집실태조사 방법을 내실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빈집관리시스템 구축
    - 빈집 조사(일반조사·상세조사), 빈집 유형 세분화(철거형·활용가능형·보존형)
- ☐ 지역·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빈집정비 체계 정착
  - O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등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등록된 빈집을 우선 지원하는 빈집 선 등록·후 지원 체계 구축
  - O 개별 빈집정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빈집에 대한 인식 개선
- 빈집의 상태·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빈집 정비 지원
  - 지자체 중심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 확산을 유도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 빈집 정비 규모: ('20) 8,000동 → ('21) 8,500 → ('22) 9,000 → ('23) 9,500 → ('24) 10,000
  - 안전·위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빈집은 철거하되, 활용·이용 수요가 높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지원

#### 3-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 첨단 기술 기반의 정주환경 고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
- (1)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농어촌 정주기반 내실화
- □ 농촌형 생활SOC 공급으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 읍면 소재지 대상으로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여 복합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
    - SOC 시설 공급 시 도시와의 거리(원격, 근교 등)에 따른 중심지의 기능 특성과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시급한 서비스를 우선 공급
    - \* 중심지활성화(누계) : ('20) 108개소 → ('21) 122 → ('22) 135 → ('23) 145 → ('24) 155
    - \* 기초생활거점(누계) : ('20) 585개소 → ('21) 675 → ('22) 765 → ('23) 845 → ('24) 925
    -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하여 돌봄 등 복지·교육 서비스를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모델을 발굴·확산
- □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로 어촌 활력 제고
  - \*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 : ('19) 70개소 → ('20) 100 → ('21) 70 → ('22) 60
  -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통합적·입체적 시설물 조성 등 뉴딜사업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하여 어촌뉴딜의 브랜드 육성 및 성공모델 창출
    - \* 사업대상지 중 8개소(경기 백미항, 충남 난지도, 전북 말도, 전남 달리도·안도항, 경남 설리항, 부산 동암항, 강원 어달행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디자인 개선 업무기준 시범적용

- (2)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제공
- □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안전 기반 구축
  -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성 및 농업인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침수피해 농경지**는 배수장·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예방
    - \* 수원공/용배수로 개보수(누적): ('19까지) 3,763개소/9,223km → ('30) 5,842/21,600
    - \*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 : ('19까지) 189.8천ha → ('30년) 302.7
  - O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 안전대책시설: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안전시설(난간, 가드레일) 등
  - 저수지 붕괴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하류지역 **주민 대피계획** (EAP, Emergency Action Plan)을 여건에 맞게 현행화
    - \* EAP 수립대상 저수지(총저수량 30만㎡이상) 1.277개소 대상 수립
- □ 취약 어항시설 안전 대책 마련
  - O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어항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사업 추진
    - \* 국가어항 외곽시설 보강(누적) : ('18) 11개항 → ('23) 25
  -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20), 내진보강사업 추진
    - \* 국가어항 기본시설 내진보강(누적) : ('18) 11개항 → ('23) 46
- □ 산림지역 자연재해 예방 추진
  - 산불 진화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산림 보호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통해 농산촌 재해취약계층 보호
    - \* 매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 투입 및 산불안전공간 20개소 조성

#### (3)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 청년층 농어촌유입 촉진을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고,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동 복합·설치
    - \* '21년까지 총 4개 단지 조성 추진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 <사례> 청안 선비마을 청년빌라 조성 사업(충북 괴산)



ㅇ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 단독주택 30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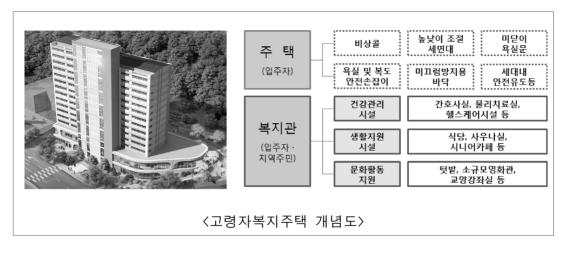
ㅇ커뮤니티센터 : 공동육아공간 및

문화여가활동 공유 공간

ㅇ공동작업장 : 입주자를 위한 텃밭 및

공동작업 공간

- □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지역 임대주택 곳급
  -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용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 주거여건이 낙후된 농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 계획 수립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 \* 고령자복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 : ('20) 20개소 → ('24) 60



#### (4) ICT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정주기반 고도화

-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 스마트기술(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농어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및 지능형 ICT 타운\* 조성
    - \* 스마트빌리지 보급(과기정통부) : ('19) 2개 읍·면(삼척시 근덕면, 무안군 무안읍) → ('20) 4개 읍·면 → ('21) 4개 읍·면 예정
    - \* 지능형 ICT 타운(행안부): '19년 시범마을 2개 군(청도, 완도) 추진 후 확대 예정
  - O 지자체, 마을협의체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 운영 가능한 서비스 실증 추진
    - \* 주민이 직접 서비스 개선 수요제기, 기획·피드백·평가 등 참여가 가능한 리빙랩 (Living Lab)기반 실증으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사례 : 무안군 무안읍 스마트빌리지 구축 방안 >





#### 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5식)

- ✓ 태양광 기반 표지판에 환경정보 안내 (미세먼지, 악취, 수질 등 300개 센서)
- ✓ 지역정보(위험 관광 등) 제공

## 스마트 쓰레기통(20개)

- ✓ 쓰레기 적재량모니터링(400개 지역)
- ✓ 적재량 예측/분석
- ✓ 수거차량 경로 최적화
- ✓ 드론 기반 영농 폐기물 영상 모니터링

- ✓ 농경지 공간정보구축
- ✓ 스마트 농업 기초 데이터 구축
- ✓ 빅데이터 기반스마트 농작물 관리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800명

- ✓ 지능형 IoT 스피커(소통박스)로 대화
- ✓ 온·숩도 및 움직임 감지로생활 지원
- ✓ 교통편 호출 등 어르신 심부름 서비스

#### 체험관 및 IoT 통합관제

- ✓ 무안 빌리지 적용 서비스 체험
- ✓ 빌리지 서비스 정보 통합
- ✓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등) 공유

#### 3-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 · 경관 보전

- ◇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 공간 가치 증진
- (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영농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 기간(봄·가을 농번기 전후) 운영, 수거 보상금 지급물량 확대 및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수거비 지원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물량 : ('20) 201천톤 → ('24) 237.5
  -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확대(~'24년, 매년 815~950여개), 마을 단위 재활용 시설 확보 등 영농폐기물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 \* 마을 단위 재활용 시설 확보 : ('19) 800개소 → ('24) 1,660(매년 172개소)
  - O 도서, 산간 등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 \* 폐기물종합처리시설 : ('19) 101개소 → ('24) 116
- 🔲 **해양폐기물** 저감 방안 마련 및 **해양 오염 자율 방제 활동** 추진
  - O IT 등을 활용한 수거 스마트화, 도서 등의 사각지대 수거 및 바다 환경지킴이 확대 등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
    - \* 해양쓰레기 수거 : ('20) 10.7만톤 → ('24) 11.9
  - 유실된 폐어구·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수거를 확대하고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 및 어업용 폐어구·부표 집하장 확충
    - \* 침적폐기물 수거 : ('18) 22백톤 → ('24) 38
  - 해양오염 사고 시 자율적 방제 활동을 위한 '국민방제대' 운영
    - \* 국민방제대 운영 계획 : ('20) 300개소 → ('21) 500 → ('22) 700 → ('23) 1,000

#### (2)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 감축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등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 노력 유도 등을 통한 소각 워인물질 워천 차단
  - \* 지자체·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봄·가을 농번기 전후(2~3월, 11~12월) 운영
- 불법소각 기동단속반 확대\* 등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12~4월)
  - \* 주말과 일출 전·일몰 후 산림 주변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시군별 2개 반 이상)
- \*\* 농진청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연간 252천명),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 ☐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O 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퇴비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퇴비 부숙도 관리반을 구성하여 지도·점검 강화\*\*
  - \* 퇴비유통 전문조직 : ('19) 140개소 → ('22) 160 → ('24) 180
  - \*\* 지도·점검 대상을 대규모 농가 → 중·소규모(1,500 m² 미만)까지 확대('20~)
- 가축 사육밀도 관리, 축사 청결 관리, 분뇨 신속처리 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여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 유도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19) 2,565개소 → ('22) 5,000 → ('24) 8,000
- **악취**(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축·돈사 현대화를 통한 축산 암모니아 저감 추진
  - \* ('19) 15개 지역 / 186 농가 → ('22): 33/400 → ('24): 43/500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절감을 위해 관리기준 강화 방안 검토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재설정('21년)

-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촌 환경 자원 활용
- □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도입 및 갯벌 복원 추진
  - 농업환경 개선 필요 지역 주민들이 토양 양분관리, 농약 저감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 개선·보전 활동을 전개('20 : 25개소)
  - 수산물 양식에 바이오플락, 순환 여과 등 선도적인 환경친화적 첨단 양식기술을 접목한 **민간 양식시스템** 지원(~'24 : 매년 13개소)
  - 갯벌 복원사업으로 갯벌의 가치를 살리고 복원지역의 소득증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19:5개소 → '22:7)

#### □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대체에너지 활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시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분뇨의 고체연료화 등 바이오에너지화 활성화
- 부산물 자원화,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20, 75만명)
- **농어촌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양식어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시설 보급 규모 : ('20) 240대(51천kW) → ('24) 260(55)

#### □ 산림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

- 농·산어촌, 에너지취약지역 등에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유도 및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수요처 마련
  - \* 목제펠릿보일러 보급 : ('20) 1,450대 → ('22) 1,600 → ('24) 1,600
-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22 : 4개소 조성)

#### (4)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 농촌 공간계획을 통한 난개발 방지
  - O 공간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고 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先계획 - 後지원체계' 마련
    - 공간에 대한 활용 전략과 그에 맞는 용도 설정 및 농촌 공간 계획과 생활서비스 시설·기초 인프라(농촌계획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
- □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활성화
  - 경관 형성 효과가 높은 작물\* 중심으로 경관보전 직불제도 개선
    -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달맞이꽃, 라벤더 등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보조금 중 일부(매년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장 정비 등 마을 경관 보전에 활용
- 농어업 유산 발굴·관리 및 세계·국가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국가 농어업 유산 지정 및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GIAHS) 등재 지속 추진 \*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지정 목표('24) : 농업 20개 / 어업 10
  - O 유산 지역 내 핵심지역 지정, '주민협의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유산 보전 관리
- □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 방안 및 활용 기술 개발
  - 농촌경관 평가지표 개발 및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자원관리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 \* 농촌 어메니티 자원 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 ('20) 2개 → ('22) 10 → ('22) 18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 요 과 제

####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 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컨텐츠 발굴
- ㆍ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

## 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 청년 취업·창업 촉진
- ·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 · 농산어촌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 용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 농어촌·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 ㆍ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성 과 지 표

성과목표	2020	2024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누계) -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설립 (누계)	90개소 13개소	110개소 19개소
농어촌 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방문객 수 (신규)	1,350만명	1,550만명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귀농어·귀촌인 창업 컨설팅 지원 (신규) -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육성 (누계)	800명 150명	1,000명 450명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누계) - 농업인력중개·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누계)	7개소 78개소	9개소 100개소

#### 가 현황 및 문제점

- □ (융복합산업)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농가의 소득 다각화가 필요하나, 융복합산업의 질적 성장에 한계
  - \* 농가소득/도시근로자소득 : ('05) 3,050/3,902만원 (78%) → ('18) 3,721/6,482 (57%)
  - 그간 정부의 농촌 융복합 지원으로 경영체는 늘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역량 확보에 한계
    - \* 인증사업자 수(누적): ('17) 1,397개소 → ('18) 1,524 → ('19) 1,624
    - \* 인증자 경영 규모별 비준 : (~1억) 11%, (1~5억) 36%, (5~10억) 21%, (10억~) 31%
  - 경영체의 사업 유형도 농산물의 **단순 제조·가공**인 경우(93%)가 대부분을 차지해 **동종·유사** 제품이 많고 **판로 확보에도 차질** 
    - 결과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융복합산업 제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재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
- □ (농어촌 관광) 농어촌 관광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프라· 관광 프로그램 미흡으로 이용객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편
  - \* 농촌관광객 수(전체/외국인) : ('17) 1,111만명/20.4 → ('18) 1,237/22.1 → ('18) 1,307/23
  - \* 재방문 의향 및 타인 추천 의향('16) : 농촌여행 69.7% vs. 국내여행 83.3%
  - \* 농촌관광 불만사항('16) : 인프라(화장실, 편의시설 등) 47.2%, 접근성(주차장, 교통수단 등) 29.7%. 프로그램·콘텐츠(유사·중복 등) 15.1%
  -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 부족, **위생·안전** 관리에서 큰 편차 등 기초적 인프라 미흡
  - 관광 트렌드·수요의 변화<sup>\*</sup>를 고려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각화**하여 **수요 저변 확대** 필요
    - \* 단체 보다는 개인 여행, 체험보다는 체류하면서 치유·힐링하는 여행 수요 등 증가

- □ (농어촌 창업) 청년 귀농어·귀촌자에 대한 창업지원이 부족한 동시에 첨단 기술(스마트기술, IoT 등)의 농어업 접목을 통한 신산업 육성 필요
  -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고용 지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
    - \* '18년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KREI)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일자리·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
  - 귀농어·귀촌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등 시급
    - \* 귀농어·귀촌 인구 : ('13) 42만 3천 명 → ('18) 49만 2천 명
  -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 등은 초기 투자비용 및 기술 진입장벽이 높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기술개발로 현장 적용 한계 노출
- □ (일자리) 최근 농어촌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상존
  - \* '19년 농림어업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55천명 증가 : ('18) 1,340천명 → ('19) 1,395
  - 농어촌형 특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 취업을 지원 중이나, 산업구조 변화 및 농어촌 여성인력 다양성 증가 대처 미흡
    - \* 농어촌형 새일센터 설치 현황(총 7개소) : 강원1, 충북1, 충남3, 전북1, 제주1
    - \* 국제결혼 비율('17) : (전국평균) 5.6%, (농림어업종사 농촌 남성) 18.4%
  - 고령화·과소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가 상시화되고 있어, 증가 추세인 **농어촌 거주 외국인**이 대안으로 부각
    - \* 연령별 농어가인구 현황 : ('10) 323.4만명 → ('18) 243.2만명. 이 중 60세 이상은
       7.1만명 증가, 2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만 명 감소(농림어업총조사, '18)
    - \* 농촌지역 외국인 수 : ('10) 13만명(농촌인구의 1.5%) → ('15) 37.7(4.0%)

#### 나 추진 과제

## 4-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관광 활성화 및 푸드플랜 체계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 다각화
- (1)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 □ 융복합산업 제품을 위한 성장단계별 판로 다각화
  - (초기단계) '지역먹거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공공급식·로컬푸드 직매장·농협 판매장에 지역 융복합산업 가공제품 우선 소비 추진
  - O (성숙단계) 온라인 쇼핑몰·편의점·수도권 무인판매대 등 국내 판로 확대 및 해외박람회·K-Food Fair 등 수출시장 개척 참여 지원
- □ 지역특화 상품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
  - 농진청 지역특화작목연구소(46개소)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품목** 발굴·개발, 상품화 및 생산 추진('24년까지 20개소)
  - 지역특화 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이 집적된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확대('19: 13개소 → '24: 19)
  -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연계한 지역 단위 클러스터 조성·확대('19:13개소 → '22:19)
- □ 융복합산업체 취·창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교육 확대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지역 대학 內 융복합사업체 연계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융복합 분야 취·창업 활성화
    - \* 학교와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간 현장 연수 및 연수후 취업 약정 MOU 추진

#### (2)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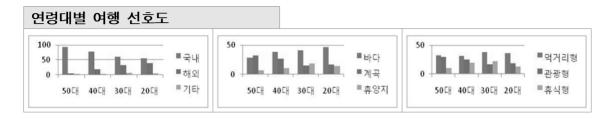
- □ 농산물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내실화 및 지속적 확장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매장에 체험·교육·복지 등의 기능을 추가한 '먹거리 복합무화공가' 조성
    - \* 로컬푸드 유통비중 : ('18) 4.2%  $\rightarrow$  ('19) 6  $\rightarrow$  ('22) 15
    - \* 농협과 협력하여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판매장 구축('18: 229개--'22: 1,210)
  - 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sup>\*</sup> 및 우수모델·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실적을 측정하는 '(가칭)로컬푸드 지수'개발·운영
    - \* 지자체, 로컬푸드 운영자, 시민활동가, 생산자 등으로 4인 1팀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푸드플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실무 교육·소통과정
  - O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된 역량있는 창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 농산물 공동 가공활동 지워
    - \* 가공장비 및 설비 공동 활용. 가공기술·식품위생 등 창업교육·코칭. 시제품개발 등
    -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누계) : ('10~'19) 86개소 → ('20) 90 → ('22) 110
  -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 농가조직화 및 생산자·소비자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품질·안전 관리 체계 구축

#### □ 지역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충

- 산지거점유통센터, 대도시 거점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와 연계한 전국단위 유통망 구축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망 등 확충
  - \* 산지거점유통센터 : (~'19)5개소 →('21)9(신규 4),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1): 2개소
-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광역개념의 **로컬푸드 Zone**을 설정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 등 지역단위 수산물 공급처 확대

#### 4-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컨텐츠 개발과 관광 서비스 인프라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농어촌 가치 증대
- (1)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컨텐츠 개발·발굴
- 농어촌·농식품 자원 연계 및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 사업화 촉진
  - 세대별 선호하는 여행 유형, 치유·힐링 등 수요가 높은 농어촌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유관기관·업계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 세계·국가 중요농어업 유산, 지역별 대표 음식·전통주 등 음식 자원이나 경관농업 활성화 지역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전북 고창 학원농장 청보리 축제, 강원 봉평 메밀꽃 축제 등
- 우수 해양치유자원·환경을 갖춘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마을을 조성, 해양레저·어촌체험과 치유가 결합된 4계절 관광 모델 개발
- □ 지역 단위 농어촌 관광 협업체계 강화
  - 지역 고유 농어촌 관광 상품·브랜드 개발, 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의체 확대
    - \* 시군 농촌관광 협의체 : ('19) 10개 → ('24) 26
  - 마을·경영체와 지역활동가·현장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농촌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는 주민주도형 농어촌관광 콘텐츠 사업체계 구축

#### (2) 농어촌 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 □ 농어촌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
  - 우수 농어촌관광자원\*의 체험·숙박·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화폐(177개 지자체)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
    - \* 2등급 이상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 민박, 농촌융복합사업장, 관광농원 등
  - 체류 방문객이 많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위생·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침구류 세탁 서비스 지원 등 운영 부담 절감
    - \* (현행) 안전 ·위생 의무교육 4시간 → (개선) 안전·위생 의무 4 + 서비스 2

#### □ 농어촌 관광 시설 안전성 및 품질 제고

- 가스공사·소방서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어촌 관광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연2회) 실시
  - \* 가스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 관광 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현재 체험마을만 적용)
  - \*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화,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등 강화

#### □ 농어촌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청년농 및 귀농어·귀촌인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농어촌 관광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고, 농촌과광해설사·플래너를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
  - \* (현행) 귀촌생활 교육  $\to$  (개선) 기업가 정신·농촌관광 인턴십·창업시뮬레이션 등 추가
- - $_{\star}$  (현행) 주민갈등, 안전위생 등  $\rightarrow$  (개선) 고객서비스, 미을해설, SNS 등 활용 능력 강화 등

#### 4-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 (1) 청년 취업·창업 촉진

- ☐ 예비 **농어업인**의 농어업분야 취업·창업 지원
  - **농업계 학교**에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지원 \* 미래농업 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 대학)을 지정·지원 중
  - 농어업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학기당 500명)
  -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전문·후계인력으로 양성
    - \* 인턴 채용시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인턴 6개월 + 정규직 채용시 추가 지원)
  - O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지원(연간 30개소)
    -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 3년간 임대 제공
  - O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초기 사업비 지원
    - \* 지원 개소 수(신규) : ('20) 40개  $\rightarrow$  ('22) 40  $\rightarrow$  ('24) 40
- □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지원 강화
  - '22년까지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3년간 월 100만원)·임대농지·창업자금 등 종합 지원
    - \* '20년 1,600명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후계농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추진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어 창업·주택자금 지원 확대('19, 500→ '20, 1,000억원) 및 청년어업인
   정착자금(3년간 월 1백만원, 연 2백명) 지원으로 청년의 어촌 정착 유도

####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조성 활성화

- 사업주체 확대(농협→지자체 포함), 공사비 상향(3억/개소 → 4.5억)과 함께 청년, 사회적 경제조직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초기 창업자들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농협·융복합지원 센터·청년벤처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 컨설팅 지원

#### <사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우수 사례

- (전북 정읍)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전통문화·전통음식 교육 및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연간 1만명, 음식 축제 개최를 통한 마을 소득 증대
- (강원 홍천) 폐교를 농장학교로 리모델링하여 출향민 및 도시민(연간 1,100여명)등의 농장 체험 등으로 활용

#### (2)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 예비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청년층 귀농어 유입 촉진을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을 지속 확대 하여 맞춤형 교육(업종별 이론·현장실습 교육) 지원
    - \* 귀어학교 지정(누계): (~'19) 4개소(경남·충남·전남·강원)→('20) 5개(경기 추가)
  - 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귀농·귀어닥터(879명), 품목 전문가 등을 통한 1:1 맞춤 컨설팅 지원 강화

- 귀농어·귀촌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이 부족한 도시지역은 도시 농혐의 교육·상담 기능 강화
- O 지역탐색, 지원정책, 일자리·주거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에 분산된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를 D/B화하여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

#### □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및 취업 지원

- O 귀농어·귀촌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
  - \* 지원 한도 3.75억원(창업 3, 주택 0.7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인의 집(262개소), **체류형 농업지원 센터**(8개소)를 운영
- 귀농어·귀촌 이전의 자격·경력을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sup>\*</sup> 하고, 각 지역의 고용센터, 새일센터, 방과 후 학교 등과 연계
  - \* 귀농귀촌지원센터(71개소) 중심 → 전국(136개 시·군)으로 확대
- 귀촌인에 대한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농산업 분야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취업희망 귀촌인 정보를 지역 소재 기업 등에 제공

#### □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주민 초청행사, 동아리, 재능기부 등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의 지역융화,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3) 농산어촌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 '22년까지 스마트팜 연구·실증단지·교육·임대농장 등이 집적된 **혁신 밸리**(4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500명 육성
    - \* 혁신밸리 조성(4개소)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 O 스마트 시설워예 및 축산 보급을 통해 청년농 창업 인프라 구축
    - \* 스마트 시설원예 및 스마트 축산 보급(~'22): (시설원예) 7.000ha (축산) 5.750호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혁신밸리 연계) 구축 및 **AI 기반 완전자동화** 스마트팜 개발을 위한 다부처 R&D 추진
  - 스마트농업 기술소개와 교육, 컨설팅을 목적으로 ICT 시설을 포함하는 하우스·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현장전문가 양성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21년, 70개소)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소개, 체험형 교육 및 농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제공
    - \* '20년까지 핵심인력 150명 → '24년까지 핵심인력 포함 전문 지도인력 450명 육성
- □ 스마트 양식장 및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 '22년까지 스마트양식장과 가공·유통·수출 단지, R&D, 인력양성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3개소 조성(개소당 400억원)
    -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베드 조성 및 기술 도입 추가 지원
      - \*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19~): 내수면(충북 괴산), 숭어 가두리양식장(경남 하동)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 기술센터, 생산단지 등이 복합된 거점(~'22, 4개소) 조성
    - \* 연구・유통(비즈니스센터) + 종자・묘목 개발(기술센터) + 종자・묘목 증식(생산단지)

- ☐ 농식품·해양수산 벤처 기업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
  - 벤처창업센터 및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농수산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편드 출자
    - \* 농식품펀드/수산펀드 운용규모 : ('20) 10.764억원/2.020억원 → ('22) 12.764/2.420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개편\*하고,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보육할 엑셀러레이터 발굴 후 지원
    - $_{*}$  (현재) 인턴제 수료 후 학점 불인정  $\rightarrow$  (개편) 다양한 대학 및 학과와 학점 인정 추진
- □ 산림 휴양ㆍ치유 공간 조성 및 산림 일자리 창출
  - O 산림휴양·레포츠·치유 숲·유아 숲 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 확충
    - \* 산림복지시설 : ('20) 683개소 → ('24) 841
  - O 나무의사 등 신규업종 발굴 및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 ('20) 230개 → ('22) 400 → ('24) 500
- □ 말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 재활 힐링센터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 말산업 Hub를 구축 하고 학생·재활·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워 확대
    - \* 재활 힐링센터/승마체험지원 : ('19) 4개소 / 7만명  $\rightarrow$  ('22) 17 / 8
- ☐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생활 서비스 공급
  - O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교육·교통 등 서비스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급하는 모델 개발 및 확산

#### <사례> 선거 웰빙푸드 (전북 임실)

- 야생화 채취 및 보존화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고령자, 범죄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 적응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
  - ⇒ 제품디자이너, 원예치료사 등 일자리 창출 (상근 3명, 비상근 7명)

#### 4-4.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 다문화·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및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1)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 농어촌형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취업 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 교육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농어촌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 ('19) 7개소 → ('24) 9
- 농어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화·유통 및 마케팅 교육, 현장 체험 등의 신규 교육과정 개발·확대
  - \* 교육 수료 다문화 여성 : ('19) 1,500명 → ('24) 7,500명(누계)
- (2)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 농어촌 **인력중개 기능** 강화
  - O 농어촌 인근 도시 및 지역의 유휴 인력과 농어업 분야 인력을 중계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 \* 농촌인력중개 /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20): 70개소 / 9개소
  - O 농촌인력중개센터 內 영농작업반 확대('19, 6,000명 → '24, 10,000)
-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및 처우개선
  - 농축수산업 수요를 감안하여 고용허가제(E-9, H-2)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C-4, E-8) 등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 배정
    - \* 고용허가제(E-9): ('18) 6,092명 → ('19) 6,596 → ('20) 6,400 + a
    - \* 계절근로자 배정(C-4): ('18) 2,936명 → ('19) 3,612 → ('20,상) 4,532
  -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기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종에 배치하고,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모범적인 사업장에 신규인력 우선 배정

#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 1 농어촌 서비스기준 내실화

- □ (핵심 항목 개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보완・신설 추진
  - 국토부 기초생활 인프라 기준을 반영하여 **접근성 개념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최소 접근시간 목표치를 함께 제시하되, 농어촌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접근시간 목표 재설정
    - \* 어린이집·유치원(5분 → 20분), 폐기물처리시설(5분 → 마을 내)
  - 공공체육, 도서관 등 국가적 생활SOC 확대 계획(생활SOC 3개년 계획)을 고려하여 3개 항목(공공체육, 도서관, 폐기물 처리 등) 신설
  - O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1개 항목(광대역 통신망)은 서비스 기준에서 제외

#### <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비교 >

구분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식품부)	기초인프라 최저기준(국토부)
근거법령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국토부 공고)
대상지역	농어촌 및 도농복합시	도시
목표치 설정 (최저기준)	농어촌 및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접근성, 행정구역내 존재 유무 등)	시설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설정(기본방침 상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고려한다고 명시)
차별항목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근린 공원, 거점 공원, 주거편의 시설, 마을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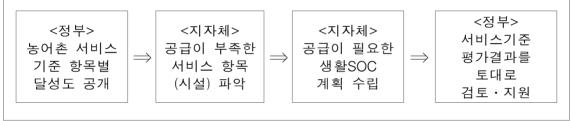
- 농어촌의 서비스 인프라 및 전달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항목의 측정 방법 및 지표를 유지해야 하는 항목은 변경없이 유지
  - \* 노인 복지, 상·하수도, 난방 및 대중교통 등 총 12개 항목

- ☐ (평가 활용 개선) 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화
  - O 이행 **부진 항목**과 관련된 사업은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전 혐의안\*을 도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 추진** 
    - \* 해당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굴
  - 서비스기준 평가 결과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워**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정부의 기초인프라 지원 사업은 서비스기준 취약지역에 우선 지원
      - \*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재래식 회장실 정비 등 지원
    - 지자체가 '**농촌 365 생활권**" 조성계획 수립 시, 서비스기준 달성도를 근거로 사업을 구성·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항목별 달성도 공개** 
      - \* 농촌지역 어디서나 30분 내 기초적 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

#### < 농촌 365 생활권 계획 수립시 서비스기준 활용 방안 >

- ▶ 지자체는 지역내 생활권의 현황(기초인프라 중 부족한 시설·분야, 부족한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생활SOC 확충 계획 수립
- ▶ 정부는 사업 지원시 해당 지자체의 계획이 기존 시설의 서비스 도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 2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 ☐ (검토 배경)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정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 O 삶의 질 법 개정('11년)으로 영향평가 도입 근거(제45조)를 마련하고, 연구기관 중심의 전문평가방식 등으로 운영했으나 실효성 문제 제기
  - O 삶의 질 법(45조 및 시행령 16조)에는 영향평가의 주체·방향·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제정
-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지침 제정
  - (평가대상)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및 사업 중 농어촌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정책 및 사업
    -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와 전문지원기관이 검토·제안한 대상 과제 중 매년 2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
  - (방식) 삶의 질 위원회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 마련
    - 삶의 질 위원회에서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승인
    - 영향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의 구성, 전문연구자가 수행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후, 개선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 □ (향후 계획) '농어촌영향평가운용지침'이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 (별도 심의 안건 상정)·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포·시행
  - \* 삶의 질 법 제45조3항은 농어촌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정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 3 시전협의 제도 도입

- □ (도입 배경) 삶의 질 정책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정책 조율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다수 제기
  - 삶의 질 법 개정('19.8)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개선조치 및 서비스기준 달성 심의 의무화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 부처 간 사전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어촌 서비스기준,** 영향평가제도 등 기존 제도들과 연계성 강화
- 【 (제도 개요) 이행 부진,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사전 혐의를 거쳐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 O (대상) 매년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전협의 대상 과제 확정

#### 〈 농어촌 사전협의 필요 과제 〉

- ①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 부진과제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달성도가 미흡한 항목과 관련된 정책·사업
- O (방식·절차) 분과위에서 협의안을 도출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상반기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후속조치 이행 추진
  - (사전협의안 도출) 각 분과위는 대상 과제 및 문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사항 및 예산 확충 방안 등 마련·권고
  - (부처 의견 청취) 분과위의 협의안에 대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의 의견\*을 청취·조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협의안 확정
    - \* 부처는 의견 제출 시,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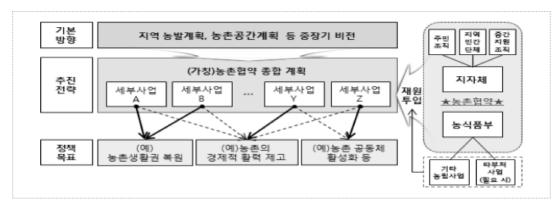
- (위원회 심의·확정) 위원회에서는 사전협의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차년도 예산 정부안 확정 전 기재부에 결과 통보
- (후속 조치 이행) 관계부처는 필요한 제도 개선(법 개정 등) 등을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 〈 농어촌 삶의 짘 관련 정책 사전협의제도 절차(안) 〉 -대상사업 후보군 선정 ○ 각 분과위별로 부진 정책·사업 발굴 사전협의안 도출 ○ 개선안(제도. 예산 조정 등) 마련 부처 의견 조회 및 ○ 분과위는 협의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위원회 상정안 마련 각 부처는 의견 개진(분과위 ⇄ 각부처) 위원회 심의 • 확정 ○ 분과위가 마련한 협의안을 최종 심의·확정 ○ 각 부처가 협의한 후속조치 이행 계획 통보 후속조치 통보 ○ 예산 조정 요구 통보(위원회 → 기재부) 이행여부 점검 ○ 이행결과 보고(각 부처 → 위원회)

- □ (향후 계획) '20년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일부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시범적 협의제 시행('21~)
  - O 농어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삶의 질 법 개정)
    - \*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
  - 시행계획 점검·평가 부진 과제 및 서비스기준 미달성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영향평가를 통한 과제 등으로 확대

#### 4 현장 추진체계 개편 및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 □ (추진 배경) 지방분권 추진으로 삶의 질 관련 정책기능 중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른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해 협업 필요
  - \* '19년 이행과제 기준 삶의 질 정책과제 169개 중 38개 이양('20~)
  - 지역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상호 시너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 필요
- □ (농촌협약 도입)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획내용을 토대로 공동 투자
  -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추진(협약 체결)
    - 지자체는 중앙의 농촌분야 삶의 질 관련 정주여건개선사업을 비롯해 자체 사업 및 민간투자나 협업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정부는 해당 시군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률을 고려하여 지역의 투자계획 타당성(사업 내용, 투용자 계획 등)을 평가, 협약 사항을 조정
  -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등도 협약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



<그림> 농촌 협약의 기본 개념도

- □ (지자체 실행력 제고) 시·도 및 시·군·구 삶의 질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체적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유도
  - O (법적 근거) 삶의 질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각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의무화
    -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제5조) 및 위원회 구성·운영(제10조의2) 규정이 '10년도에 신설되었으나. 현재 지자체 단위 운영 실적 부재
  -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는 지역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필요시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컨설팅 제공
    - 지자체 삶의 질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관련 정책 추진 시 협업 지원
  -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내 농어업인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
    - 다수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의 조정·연계 및 민간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 기능 강화
    - \* 청양군은 농촌공동체과 신설('19년), 농촌정책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 □ (현장 모니터링 체계 마련) 현장 단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상황 점검, 주민들의 정책 개선 요구 수렴을 통한 정책 피드백 강화
  - 분야별 현장 전문가와 농어촌 주민이 참여하는 '**삶의 질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 및 협업 강화
    - 전문지원기관에서 운영해온 기존 모니터링 그룹(KREI 리포터)에 관계 부처·지자체 추천을 받아 모니터링단 확대
  - O 핵심 과제 현장 평가, 정책 개선 의견 수렴, 새로운 정책 이슈 발굴 작업을 모니터링단을 통해 정례적·상시적으로 수행



## Ⅶ 실행 및 관리 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각 부처) 및 지자체 5개년
   계획(시·도) 수립·추진(시·군은 시·도 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
-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및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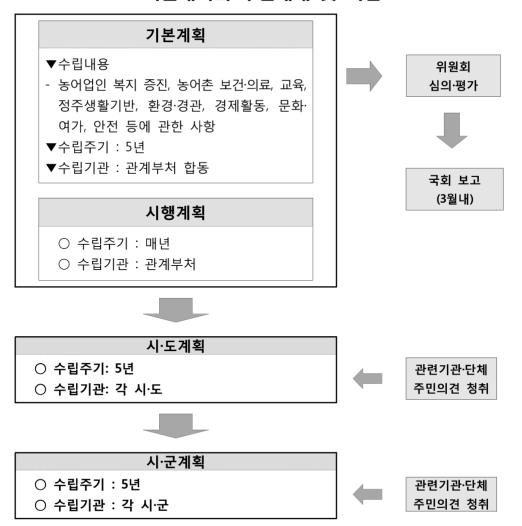
#### (1)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O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3월까지 위원회 사무국(농식품부)으로 제출
    - \* 사무국에서는 매년 말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 O 사무국에서는 각 부처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 ☐ 시행계획 점검·평가
  - (목적) 각 부처·청에서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평가방법) 서면·지역평가 병행 실시
    - (서면평가) 전문 평가단이 평가지침에 따라 과제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부진 과제 선정
    - (지역평가) 시·도 연구원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과제별 투입·산출·성과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면담조사, 통계 자료 분석 등의 방식으로 평가
  - O (환류) 사업 개선의견 및 재원배분 방향 제시, 위원회 심의
    - \* 평가결과 하위 그룹은 사전협의 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 도출

#### (2)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과 평가

- □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
  - O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 시·군은 시·도 계획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로 제출, 시·도는 시·군 계획을 종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자체 점검 평가 실시단을 구성하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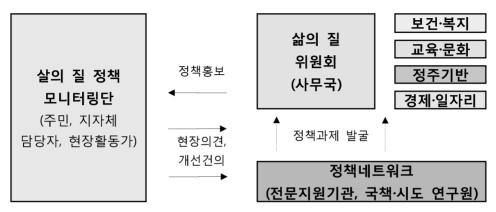
####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 (3) 현장의 정책체감도 모니터링·평가

- ☐ '삶의 질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소통 강화
  - 농어촌 지역주민, 시·도 및 시·군 정책 담당자,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정책 동향 간담회 개최하고,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수행하여 현장 의견을 수시 수렴
  - 개선 의견은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화

#### <위원회 및 정책 모니터링단 체계도>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를 정례적으로 수행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
  - O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복지·서비스 실태 및 정주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

####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법적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3,929가구(농어촌 2,780, 도시 1,149)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조사내용: 9개 부문 78개 항목

## 참고1 :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개정 전후 비교[안]

#### <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정 전) >

부문	핵심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기준	'19년 기준 ੴ
1. 보건·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 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 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복지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0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2. 교육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3. 정주 생활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기반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 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4. 경제 활동 ·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50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7. 안전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17) 소방 <del>출동</del>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 <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정 후) >

부문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기준	목표 (분, %)
	1) 진료	시·군내에서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1. 의료·	2) 응급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0분
복지	3) 영유아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4) 노인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80%
	5) 학습	읍·면내에서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6) 체육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2. 교육· 문화	7) 초등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8)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0%
	9) 문화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10) 생활편의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11)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지붕은 철거 혹은 개량한다.	23%
	12)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5%
	13)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
3. 정주	14)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68%
9. 8 T 여건	15)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16)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17) 경찰순찰	농어촌 범죄취약 지역은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100%
	18)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70%
4. 경제 활동	19)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 참고2 : 농어촌 삶의 질 영향평가 운용 지침(안)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법"이라 한다)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
  - 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 저책 사업

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후보 과제 발굴)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 등은 영향평가 대상 후보 과제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안한다.
  - 가.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평가방식 및 개선방향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무국과 전문지원기관 등은 농어업인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 대상 관련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책 개선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평가 대상 과제 선정) 위원회는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매년 2개 이상 심의·선정하다.
- ③ (위원회의 시행계획 승인) 위원회는 매년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한다.

- 가. 전문지원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 나. 시행계획에는 평가 대상 과제 및 조사·분석을 담당할 전문연구진 명단, 조사·분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 농어촌 영향평가는 대상 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의 구성원 혹은 전문연구자가 해당 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행한다.
  - 가. [대상 정책·사업 현황]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 계획 및 집행, 세부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다. 특히,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달성도가 미흡한 항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경우, 농어촌 지역 및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정량 지표 등으로 제시한다.
  - 나.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 및 기준] 평가의 관점·방법·절차·기준(평가지표 등)을 제시한다.
  - 다.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정책·사업 목표와 수단 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성과의 투입·산출·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사업의 도·농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 라. [대상 정책·사업의 한계 및 개선과제] 해당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제도, 예산 투입, 추진체계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 ⑤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위원회 사무국은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농어촌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실 및 현황,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조정 등을 포함한다.
- 제6조(후속조치 이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 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안) [제4조 관련]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세부과제명
응급서비스	①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②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소방청)
진료서비스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
영유아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영유아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평생교육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내실화
대중교통	농어촌형 교통모델
대중교통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대중교통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u></u> 주택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u></u> 주택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u></u> 주택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하수도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난방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농업법인 취업지원)
방범설비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